

## 사. 복직절차

- 1) 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(불임 · 난임치료)의 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(임신 확정)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,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(다만, 불임 · 난임치료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)  
※ 휴직 사유 소멸 시 이어서 산전 육아휴직 및 산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함
- 2)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
- 3)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 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(『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』 제25조)
- 4)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, 불임 · 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
- 5) 불임 · 난임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증빙서류(진단서 등)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 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 
※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직 중에 지급한 보수를 징수하며,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계사유에 해당함

## 아. 육아휴직과의 관계

- 불임 · 난임휴직 기간 중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한 경우 복직 후 산전 육아휴직 및 산전 출산휴가 가능

## 자. 기타

- 1) 불임·난임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
  - 가) 경력평정: 미산입
  - 나) 호봉승급 :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
- 2) 결원보충: 결원보충 안함
- 3) 불임·난임휴직 보수
  - 가) 봉급(『공무원보수규정』)
    - 휴직기간이 1년 이하: 봉급액의 70퍼센트 지급
    -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: 봉급액의 50퍼센트 지급
  - 나) 수당(『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)
    - 정근수당: 휴직 1월에 대하여 '수당액 × 1/6' 감액 지급
    - 정근수당가산금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: '수당액 × 0.3(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.5)' 감액 지급(별표 4 참조)
    -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가계지원비, 직급보조비 - 지급 안함